

불만 신고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민권법 제6편 차별금지 조항이나 관련 법률에 기반해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차별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또는 차별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서면으로 불만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

1.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 해당인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및 해당인과의 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차별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날짜
3. 귀하를 차별했다고 생각되는 부서나 기관 또는 사무국 등의 이름과 주소
4. 해당 기관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5. 차별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설명과 차별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능한 자세한 내용 포함)
6. DC 교통부(DDOT)가 혐의에 대해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7. 귀하의 서명

본 브로셔 뒷면에 있는 DC 교통부(DDOT) 주소로 불만신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C 교통부에서는 내가 제출한 불만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 DC 교통부의 평등 & 포용성 부서(Equity & Inclusion Division)에 문서로 기록되게 됩니다. 교통과 관련된 불만 신고가 아니고 DC 교통부나 교통부 산하 기관이 피항소인으로 지명된 민권법 제6편 관련 불만 신고는 미 연방고속도로국 (FHWA)으로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DC 교통부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해 제기된 교통 관련 불만 신고는 미 연방교통부(FTA)로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DC 교통부는 접수되고 처리된 모든 불만 사항의 사본을 3년간 추적하고 보관합니다.

이 절차는 미 교통부에 직접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귀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보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DC 교통부와 DC 교통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은 법을 위반하는 규정이나 관행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증언을 하거나 민권법 제6편에 의거해 불만 신고/고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시 DC 교통부의 평등 및 포용성 부서(Equity and Inclusion Division)에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불만 신고를 접수하시려면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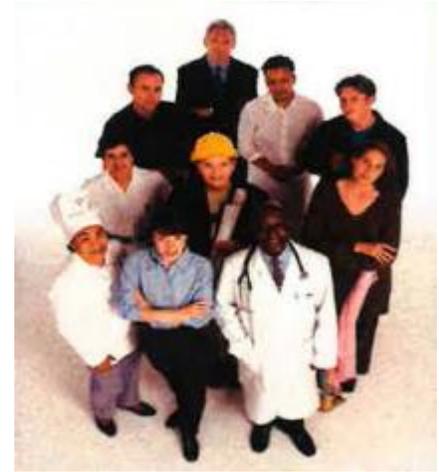
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ffice of the Director
Equity and Inclusion Division
250 M Street SE, 8th Floor
Washington, DC 20003
Phone: (202) 673-6813
ddot@dc.gov

“단순한 정의는 모든 인종의 납세자들이 기여한 공적 자금이 어떤 방법으로든 인종 차별을 조장하거나,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거나, 지원하거나, 초래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존 F. 케네디 대통령



1964년 민권법 제6편에서 보장되는 권리



“미국 내 그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참여를 거부당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42 U.S.C. §2000d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MURIEL BOWSER, MAYOR



민권법 제6편이 무엇입니까?

1964년 민권법 제6편(Title VI)은 개개인들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차별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입니다.

민권법 제6편에서는 차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기회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권법 제6편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차별 행위는 한 개인 또는 단체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를 이유로 공공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민권법 제6편 하에서 차별 행위는 다음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 한 개인이나 단체가 수혜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재정 지원 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질적, 양적 또는 방법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와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 한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 계획이나 자문 회의/활동 또는 유사한 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거부당하는 경우

민권법 제6편은 누가 준수해야 하나요?

DC 교통부(DDOT) 직원, 계약업체, 컨설턴트, 공급업체 및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들이 민권법 제6편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계약에는 민권법 제6편의 준수를 의무로 하는 표준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DC 교통부의 계약업체는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연방 정부 지원 고속도로 공사 프로젝트나 기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고용에 있어서도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DC 교통부의 민권법 제6편 정책 및 보장

DC 교통부는 민권법 제6편과 관련 법에 명시된 대로 그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거부당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참여

DC 교통부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부터 착공 및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민권법 제6편 규정은 주요 환경법 및 교통법과 함께 교통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계획 초기에 참여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수인종, 저소득층, 장애인,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 및 다른 장벽에 가려진 계층 등과 같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다가가 이들을 참여시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권법 제6편 & 환경 정의

행정명령 12898호(소수인종 및 저소득층의 환경 정의를 다루기 위한 연방 조치)는 민권법 제6편에 중점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소수인종 및 저소득층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 정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또는 불균형적으로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환경 정의를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DC 교통부는 환경 정의의 원칙을 정책과 계획, 프로젝트 개발 활동에 포함시켜 도시 전역의 소수인종과 저소득층에 불공평한 영향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 능력이 제한적(LEP)이거나 영어를 못하는(NEP)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LEP) 사람은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지 않으며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을 지칭합니다. 영어를 못하는(NEP) 사람은 영어를 어떤 수준에서도 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행정명령 13166호는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NEP)이 보통 영어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4년 DC 언어지원법(Language Access Act)과 그 이후의 수정 조항들은 중요한 문서를 영어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이와 같은 문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인구 중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해당 서비스를 받는 인구의 3% 이상이거나 500명 이상인 경우(더 적은 숫자 적용)에 적용됩니다.

DC 교통부는 번역과 통역 등의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어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서비스와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